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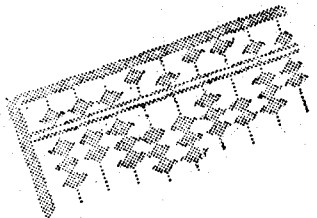
企業經營과 税金講話 6

企業經營의 合理과 效能을 爲해 알
기 爲기 엮어 가는 税金特講을 連
載한다.

相續稅란 무엇인가?
納稅義務者란?
贈與稅란 무엇인가?
課稅財產이란?

李 文 宰
韓國稅務會計研究會會長

第 6 講 相續稅와 贈與稅



相續稅는 相續이나 遺贈에 의하여 財產을 取得하
는 경우에 그 取得者에 대하여 그 財產의 價額을 標
準으로 하여 課稅하는 税金이다.

租稅理論上 相續稅는 財產相續에 대하여 課稅하므
로 取得稅의 一種이라고도 하겠다. 곧 相續稅는 財
產의 相續이라는 事實에 대한 課稅이기 때문에 副
對的인 取得課稅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相續財產 그 自体를 捕捉하면 財產課
稅 즉 所有課稅이기도 하고 또 財產權의 移轉이라는
事實에 着眼하면 流通課稅라고도 할 수 있으니 이의
分類는 論者에 따라區 區하다 하겠다.

封建社會에 있어서는 家庭이 生活의 中心이었기 때문에 財産의 相續에 課稅하는 社會的인 理由는 發見할 수 없었으나 個人主義思想의 發達이나 富의 偏在을 是正하려는 思想이 拾頭됨에 따라 不勞所得이라 할수 있는 財産相續에 대한 社會的인 批判이 強해지고 따라서 相續稅는 世界各國의 現象이 加重賦課의 傾向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相續稅는 이를 回避할 目的으로 贈與의 形式을 取하는 일이 있음으로 이를 防止하기 위하여 相續稅의 補完稅로서 贈與稅가 設定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贈與稅가 相續稅法에 包含되어 있다.

I. 納稅義務者

1. 納稅義務者

相續稅의 納稅義務者는 原則적으로 相續財産 또는 遺贈財産을 받는 個人이다.

그리고 相續人 또는 受遺者는 各者가 받은 財産의 占有하는 比例에 따라 相續稅를 納付하여야 하며 또한 相續人 受遺者 또는 相續財産價格에 算入된 贈與를 받은 者(遺贈이 아님)는 서로 連帶하여 相續稅를 納付할 義務가 있다.

2. 相續開始와 納稅地

財産相續은 民法에 의하면 死亡으로 인하여 開始된다고 하였다. (民法997)

따라서 相續稅를 課稅하는데 있어서도 相續의 開始日이라 함은 被相續人의 死亡日이 되는 것이며 失蹤宣告로 인한 相續의 경우에는 失蹤宣告日을 相續開始日로 보게 되어 있다.

그리고 相續稅의 納稅地는 相續開始地를 管轄하는 稅務署로 하며 相續開始地는 被相續人의 住所地를 말한다.

또한 相續開始地가 國外인때 즉 被相續人의 住所地가 國外인 경우에는 國內에 있는 財産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稅務署가 所管稅務署로 되며 二個所以上의 稅務署管內에 相續財産이 所在할 때에는 主된 財産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稅務署로 하게 되었다.

II. 相續財産

相續이란 死亡한 사람에게 속하는 一切의 權利

義務가 相續人에게 承繼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財産相續이므로 이에 關聯한 것만 찾아서 相續稅의 課稅方法등을 알아 보기로 한다.

1. 相續人

相續人은 被相續人의 配偶者와 一定한 범위의 血族인데 財産相續에 있어서 民法上의 相續人이 되는 順位를 본다면 다음과 같다. (民法 1,000)

① 被相續人의 直系卑屬

② 被相續人의 直系尊屬

③ 被相續人의 兄弟姊妹

④ 被相續人의 8寸以內의 傍系血族 被相續人의 妻는 위 ①号 ②号와 同順位로 共同相續人이 되며 ① 및 ②가 없을 때에는 單獨相續人이 된다. (民法 1,003)

여기에서 또한 同順位の 相續人이 數人인 때에는 最近親을 先順位로 하고 同親등의 相續人이 數人일 때에는 共同相續人이 된다. (民法 1,000 ②)

이밖에 胎兒의 順位에 관해서는 이미 出生한 것으로 보며 婚姻한 때 出子의 順位에 關해서는 父母가 婚姻한 때 出生한 것으로 본다. (民法 1,000 ③, 988, 989)

그리고 相續人이 될 直系卑屬 또는 兄弟姊妹가 相續開始前에 死亡하거나 欠格者가 된 경우에 그 直系卑屬이 있는 경우에는 그 直系卑屬이 死亡하거나 欠格된 者의 順位에 가름하여 相續人이 된다. (民法 990)

2. 相續人

遺言으로 相續人을 定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遺言에 따른다. 즉 被相續人은 遺言으로 相續財産의 分割方法을 定하거나 이를 定할 것을 第3者에게 委託할수 있고 相續開始의 날로부터 5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期間內의 그 分割을 禁止할수 있다 (民法1012)

遺言으로 相續分의 指定이 없는 경우에는 法定相續人에 따른다.

3. 法定相續分

遺言으로 定하지 아니한 경우에 相續人이 받는 相續分은 民法上 다음과 같다. (民法1009)

① 同順位の 相續人인 人일 때에는 그相續分은 均分으로 한다.

가, 財産相續人이 同時에 戶主相續을 한 경우에는 相續分은 그 固有의 相續分의 5割을 加算한다.

나. 女子의 相續分은 男子의 1/2로 한다.

② 同一戶籍內에 있는 女子의 相續分은 男子의 相續分의 1/4로 한다.

③ 被相續人의 妻의 相續分은 直系卑屬과 共同으로 相續하는 때에는 男子의 相續分의 1/2로 하고 直系尊屬과 共同으로 相續하는 때에는 男子의 相續分과 均分으로 한다.

4. 相續의 承認 또는 拋棄

財産相續人은 相續開始 있음을 알기된 날로부터 原則적으로 3個月內에 이를 承認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民法1009)

財産相續人이 相續을 포기할 때에는 法院에 이를 申告하여야 하고(民法1041)

포기한 相續分은 他相續人의 相續分의 比率로 그 相續人에게 歸屬한다(民法1043).

5. 遺贈

遺贈이라 함은 遺言으로서 財産을 他人에게 無償으로 贈與하는 것을 말하는데 遺贈으로 財産을 取得한 경우에도 相續人과 同一하게 相續稅가 賦課됨은 勿論이다.

III. 課稅財産

1. 課稅財産의 범위

被相續人이 國內에 住所를 둔 때에는 相續財産의 全部에 대하여 相續稅를 賦課하고(無制限納稅義務) 被相續人이 國內에 住所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國內에 있는 相續財産에 대해서만 相續稅를 賦課한다. (制限納稅義務)

2. 看做相續財産

다음에 제기하는 것은 相續人일 경우에는 相續에 의하여 相續以外的 者일 경우에는 遺贈에 의하여 取得한 相續財産으로 看做한다.

① 生命保險金, 損害保險金

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相續人과 相續人 以外の 者가 받는 保險金이 다음 형식에 의하여 計算한 金額

$$\text{保險金} \times \frac{\text{被相續人의 負擔한 保險料}}{\text{死亡時까지 拂入된 保險料額}}$$

이 경우에 被相續人이 負擔한 保險料는 保險証分에 記載된 保險料의 金額에 의하여 計算하고 保險相續에 의하여 被相續人이 配當받은 利益配當金으로서 當該 保險料에 充當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充當된 部分의 利益配當分 相當額은 被相續人이 負擔한 保險料에 포함한다.

그리고 保險契約者가 被相續人 以外的 者인 경우에도 被相續人이 現災로 保險料의 支給을 하였을 때에는 被相續人을 保險契約者로 看做하며 다만 相續人과 기타의 者가 받는 保險金의 合計額이 百萬元을 초과하는 部分에 限한다.

② 退職手當, 功勞金

退職手當 功勞金 또는 이에 類似한 給與로서 被相續人에 支給할 것이 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그 相續人과 相續人 以外的 者에게 支給될 때에도 相續財産으로 본다. 다만 給與合計額이 百萬元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部分에 限한다.

그러나 그 財産에서 생기는 利益의 全部 또는 一部가 相續人, 被相續人 또는 그 親族에게 歸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寄附한 財産

② 相續人稅法施行令에서 定하는 諸條件에 의하여 運營되는 宗教事業, 慈善事業, 學術事業·기타 公益事業에 出捐한 財産

③ 民法上의 治療費 또는 教育費로서 通常扶必要하다고 認定되는 金品

④ 權賢救濟品 기타 不遇한 者를 도움기위한 金品으로서 20萬圓 未滿의 것

⑤ 政黨法의 規定에 의한 政黨에 贈與 또는 遺贈한 財産

⑥ 紀念品, 祝賀金, 賦儀金, 婚需用品 기타 이에 類似한 金品으로서 20萬圓 미만의 것

以上에 제기하는 非課稅財産은 贈與를 한 경우에도 亦是 同一하다. 이밖에도 非課稅로 되는 財産은 民法 第996條에 規定하는 財産과 公務員年金法에 의하여 支給되는 遺族扶養金 및 遺族一時金 등이 있다.

(註: 民法996 = 墳墓에 屬한 一町以內의 禁養林野와 6百坪以內의 墓土인 墓地, 族譜와 祭具의 所有權은 戶主相續人이 이를 承繼한다)

4. 公益事業의 범위

相續稅나 贈與稅가 非課稅로 되는 財産의 出捐에 있어서 宗教, 學術, 慈善, 기타의 公益事業은 다음 各號에 該當하지 아니한 公益事業과 教育에 의한 教育機關을 運營하는 것이라야 한다.

① 出捐者나 그 親族 또는 出捐者와 特別한 關係가 있는 者가 理事로 되어있는 法人이 運營하는 公益事業

② 出捐者나 그 親族 또는 出捐者와 特別한 關係가 있는 者가 理事의 選任 기타 事業運營에 관한 重要事項을 決定할 權限이 있는 公益事業

③ 그 事業의 目的이 社會的地位, 職業, 勤務勉, 出生地 등에 의하여 一部에 對한 惠澤이 提供되는 公益事業

④ 出捐財産을 그 取得日로부터 1年을 넘도록 當該出捐目的에 使用하지 아니하는 公益事業

⑤ 事業을 終了한 時의 殘余財産을 國庫에 歸屬시키지 아니하기로 한 公益事業

위에서 말하는 特殊한 關係가 있는 者라 함은 다음에 該當하는 者를 말한다.

① 出捐者의 配偶者(事實婚關係에 있는 者 包含)의 親族

② 出捐者의 使用人

③ 出捐者의 親族의 配偶者와 그의 4寸以內의 親族

이와같이 相續稅나 贈與稅에서 非課稅가 되는 財産의 出捐을 出捐者나 그 親族 및 特殊關係있는 者가 構成員으로 된 公益事業에 한 때에는 非課稅로 아니 하겠다고 72. 1. 1부터 施行되는 新法令에 規定한 理由는 似而非公益事業의 出現과 脫稅를 防止하기 위한 것이다.

5. 家族控除

無制限納稅義務 者 國內에 住所를 둔 者는 死亡으로 인하여 相續이 開始된 경우에는 課稅額에서 相續開始 當時의 被相續人의 配偶者와 被相續人의 同 家族 및 相續人中 未成年者, 60歲 以下의 年老者 또는 不具疾病者가 있는 경우 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控除한다.

① 配偶者 150만원

② 未成年者 20만원과 20歲에 達할때까지의 年數 墓土인 墓地, 族譜와 祭具에 5萬원을 公한 金額의 合計額

③ 年老者 40만원

④ 不具癱疾者 40만원

위 第④에 該當하는 事項이 ①②③과 重複되는 경우에는 이를 合算한 金額을 控除한다. 不具癱疾者라 함은 禁治產者, 限定治產者, 병어리, 봉사, 키머거리 기타 중대한 負傷을 입었거나 不治의 疾患에 걸려 恒常着護를 必要로 하는 者를 말한다.

그리고 家族控除에 있어서는 同 家族에 限하는 바 同 家族이라 함은 被相續人이 事實上 扶養하고 있던 直系尊卑屬을 말 한다.

또한 留意할 것은 이와같은 家族控除는 반드시 相續開始日로부터 3個月以內에 相續稅에 관한 申告前에 家族控除申請者를 添付한 경우에 限하여 控除한다는 点이다. 다시 말해서 3個月以內에 相續財産明細와 相續稅에 관한 申告 그리고 家族控除申請者를 提出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法上 控除를 받을 수 있는데도 控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흔히 있는 事例에 따르면 中産層의 경우 各種控除를 한다면 課稅額이 全無한데도 所定期日內에 申告를 아니하여 控除의 惠澤을 못받고 오히려 課稅가 된 일이 있다. 말하자면 잠자는 權利는 保護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相續稅나 贈與稅에 대한 解説은 次號에 까지 걸쳐지게 되겠으므로 이번은 여기서 끝맺고 다음회에서 나머지 部分과 그리고 課稅額의 算定 및 稅額 算出에 따른 實例을 좀 具體的으로 들어 理解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까 한다. (계속)